

---

제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1956년11월28일(단기4289년)(수) 상오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4차회의록낭독
  2. 보고사항
  3. 미곡양등으로인한경찰력발효경위에대한질의의견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변상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직무대리조례안
  7. 시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
  8. 기부심사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건
- 

부의된안건

1. 제4차회의록낭독 ... 1面
  2. 보고사항 ... 3面
  3. 미곡양등으로인한경찰력발효경위에대한질의의견 ... 5面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 ... 21面
-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재석 25인으로서 제5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회의록을 낭독 하겠습니다.

---

1. 제4차회의록낭독

(간사장 제4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이있음)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지금 회의록을 일거본결과 어제 규칙발언이 있었는데 규칙발언으로 되어있지않고 어떠한 동의에대한 찬성 발언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예를들면 제가 어저께 발언한 것이 약수동 판자집문제에 대해서 규칙발언을 한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도 규칙발언의 요지가 무엇이나하는것을 선명히 하기위해서 이것을 정정해주시지 않으면 안될줄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문기옥 의원; 지금 회의록중에 어저께 그문제가 사회보장이 소관되었으니까 그는 사퇴한다고 이렇게 간단히 적혀있습니다. 물론 사임을 하겠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이유가 분명치않다 그말이에요. 어저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 수일전에 모분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이있어가지고 대책위원을 구성하자고 동의가 되어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저께 이것은 모분과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만약 여기에 결의할적에는 그분과를 불신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 그분과에 넘기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말자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분과에는 그런것을 그냥 넘겨주고 빈약한 분과라는것은 덮어놓고 발언권을 달라해도 주지않고 그것을 그냥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것은 전적으로 무시한것이니까 즉 그것이 누락된것같으니 그것을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이의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제4차회의록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홍성유의원 이기환의원 두분입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말씀하세요.

---

## 2. 보고사항

○정태희 의원; 회의진행상 이사람이 좀 생각한것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의회가 생긴지 3개월이 되었는데 가만이 보면 모든일에 시간이라는것은 하등관념이 없이 보고 있고 또 가만이보면 늘 나와서 말씀하시는분만 자주 나와서 말하고 말못하는이는 병신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는데가 많이 있다말이에요. 제 자신이 늘 의사를 표시하고싶은데 여러분이 나갈려고하니까 말을 못하게됩니다. 그런점을 보아서라도 각자가 좀 양보해주셨으면 병어리같은 이사람도 말할 기회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나라에서 회의를하는것을 보면 먼저 소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나오면 본회의석상에서는 전부 통과만 시키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할수있는대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혹시 그렇게 되리라고 할수있지요만은 지금보면 세계 어느나라에서든지 규칙을 보면 다 그런 형편에 있게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할수있는대로 앞으로 회의를 할때에 각위원회가 있느니만큼 거기서 다 미리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통과만 시키도록 한다고하면 잘 진행되고 시간이 절약될수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규칙도 있습니다만은 두번이상은 일어나지 못하게되어있는데 어떤때보면 두번이상 일어나는분도 간혹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각자가 될수있는대로 한번씩만 일어나셔서 각자의 의사를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궁금증이

나는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이로서 보고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고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개회시간이 열시로 되어있는데 늘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30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도 있겠지요. 하나 이로부터 여러가지 안건이 많고 긴급한 일이 많으니만큼 내일부터는 정각을 지키지않는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해두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기때문에 이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준식 의원; 그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발족된후로 교육감이 발령이나지않은 까닭에 여러분앞에 교육감이 나와서 인사를 못들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다는것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영훈; 금번 소개를 받은 김영훈이 올시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창설기에 있는 의회를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사람이올시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여러분께서 160만 시민을 대표해서 교육위원을 뽑아주셨고 교육감으로서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원래 덕이 부족한 제가 24일날자로 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컨대 우선 인간으로서 수양이 부족한 저이고 교육자로서 변변치못한 식견에 행정관으로서 넉넉치 못합니다. 암만해도 제 스스로 부족한 저를 잘 느낍니다만은 다행히 능숙하신 옹호로서 교육위원이 계시고 또 그등뒤에 열렬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때문에 여기에 지도 편달을 받들어서 제 있는 역량을 다해서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다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용;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미가 양등으로 인한 경찰력 발동경위에 대한 질의의견에 대해서 어제 약속한바와같이 시장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

### 3. 미곡양등으로인한경찰력발효경위에대한질의의견

○부의장 신용우; 시장께서 나오시지 못해서 부시장이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가 양등에 대해서 경찰들이 어째서 발동되느냐 그 경위를 말해라. 그리고 쌀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서울시로서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기 전에 참고삼아서 오늘아침 미가시세를 말씀들이고 그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27일에는 경기도산 미가 한가마니에 1만9천환 호남미가 만8천환 소매금이 소두당에 2천환 그러든것이 오늘 28일 아침에 시세는 경기도산이 만8천2백환 호남미가 1만8천환 내외하고있으며 1만7천2백환 이것 역시 8백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떨어진 시세 이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참고삼어 말씀을 여쭙어두고 다음에 경찰들의 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지 내용은 경찰들의 발동이라고 까지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될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달 8일 현재로 1만3천환 내외를 올라내리고 있는것이 어저께 11월22일날 드디어 1만6천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1만6천환대로 쌀값이 올라갔느냐 이것을 규명해볼때에 거년의 12월

초하루날 부터서 12월20일까지의 즉 거년의 이때 쌀이 서울역에 입하된것하고 금년 초하루 부터서 20일까지의 사이에 서울시로 쌀이들어온 양은 수자적으로 보니까 거년하고 대차이없이 서울시로 식량이 들어온것이 들어났습니다. 또 시가면으로 따져볼것같으면 거년11월 이맘때는 한가마당 7천환 내지 8천환 내외를 오고갔든것이 금년 들어서는 1만6천환으로 드디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가시세에다 비교해볼것 같으면 그 올라가는 물이 대단히 높아가고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물가시세가 올라간 비율과 마찬가지로 비율을 해준다면은 이쌀값이 거년 이맘때에 7천환 8천환 했으면 거이 1만3천환 내외를 오고가야 할것인데 이것이 1만6천환대를 돌파를 하는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이런까닭에 이대로 만일 물가가 올라갈것같으면 당장에 우리의 식량에 위험이 될것이며 또 경제의 지금 500대 1 환율을 유지가 될른지 안될른지 대단히 일대위험을 느껴가지고 누구나 다 위협을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가는 경로를 대개 볼때에 서울역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쌀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서울역에서 시내의 시장으로 이 쌀이 나가는데 아시다싶이 역앞에 가보면 청과시장이고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아현시장, 청량리시장, 그런 큰 시장으로 바로 위탁상을 경유해서 그 시장으로 나갈것같으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에 왕왕이 이 시장에서 쌀이조금 딸릴것 같으면 남대문역 구내에서 소위 驛童이라는 도매상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대량으로 매매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 역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방에서 쌀이

올라와서 이제 말썸들인 그런 큰 시장으로 쌀이 들어가면 그 소비자하고 사이에 무엇이 하나가 끼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것이 말하자면 중간 이익을 취하는것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구내에서 그러한 크다란 미곡상인들이와서 대차에서 말 내려오는 쌀을 거래하는 장소로 되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교통부하고 이 시경에서는 항시 연락해서 역구내에서 크다란 미곡 도매상하고 그 화주하고 이것을 매매하는것을 될수있으면 안하도록 막어보는것이 금년5월 6월경 부터서 그런 행위는 역구내에서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역구내에서 대량 매매하는 행위는 거이 없을것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없어지고 보니 어떠한행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역전에..... 역에서 가차운 청과시장에서 그런 대량의 미곡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전날만해도 만여 가마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7천여 가마가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래가 되느냐 하는것을 따져볼것같으면 우선 여기서 아까 말썸들인 일곱가마 여덟가마 큰 시장에 바로 나가면 쌀 한가마에 운임이 약 3십환이 드는데 그 청과시장으로 바로들어가면 15환밖에 들지않는다. 그래서 이 청과시장에서 바로 그냥 매매를하고 볼것같으면 한가마당 약 그 거래 상인들이 2백5십환 이상을 중간 이익을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하는것이나 역을 거쳐서 청과시장에서 거래하는것이나 이거래상만 이익을 보게 되므로 중앙시장에 역에서 빨리 쌀이 들어갈것 같으면 거기서 미곡상인들이 득보는 2백5십환이라는것이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것을 능히 제거할수가 있다 말썸이에요. 이런까닭에 한분이라도 소비자가 싸게사다먹을려면 그러한 운반비가 줄어들어야 된다 말썸이에요. 그래서 위탁상인이나 대상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것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달 22일날 시세가 1만6천환대를 돌파하기 시작할때에 경찰국 조사과에서는 시내에있는 크다란 위탁상인과 대상인들을 모아서 미가 양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한것이 지나간달 22일날 시경조사과에서 대상인과 위탁상인이 모여서 간담회같은 모임을 가졌든것입니다.

그자리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하면 쌀값이 이렇게 올르고 보면 우선시민대중의 식생활의 위협이 되고 또 경제 모든 물건의 값의 좌우가 되는 이 쌀값이고 보니 우리가 순전히 영업자의 입장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그날 회합을 해서 될수있으면 서울역에서 떨어져서 화주가 직접 신고 아현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으로 직접가는 것은 엄수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상인에게 가는 이익을 제거해주어야만 올라가는 쌀값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한 얘기……. 또 그날그날의 쌀값이 결정되는 것이 이러한 위탁상인이 모여서 지방에서 들어오는 쌀의 거래되는쌀에 따라서 대개 가격이 결정되는것입니다. 그분들만 모여서 그분들의 협조심이나 혹은 애국심에 호소할것 같은 우리 식생활의 미가 양등에 대해서 도움이 될것이 아닌가 해서 그날 모임에서 중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법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서 물가가 올라가는것을 막는것이 아닙니다. 틀어막자면 법적국가인 만치 법률에 의해서만 틀어막어야 될터인데 경찰에서 경찰권을 발동해서 미가양등을 저지하는것보담도 그런 값자기 그렇게뛰여 올라가는 쌀값에 대해서 서로 단결해서 그내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심을 양양하고 또 조장을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경찰력의 발동이다. 이런데로 알려지고 동시에 거기에 근원이 있든지 혹은 다른



근원이 있었든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든 여전 쌀값은 계속양 등해서 어제아침 시세에 1만9천환 시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절 그러한것이나마 중지를 하고 말았든것입니다. 이제와서는 경찰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이것은 전연히 자유시세이고 자유행위이니만큼 누구나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고하기때문에 이제는 위탁상인들이나 대상인들의 협조심을 권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되었고 또 그렇게 건의해가지고 소용이없다. 세상에 알려짐으로서 미가가 올라가고 그러한 기회를 대단히 얻기가 힘든것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내버려두어도 대단히……. 얼마든지 올라가고있는것을 경제원칙에 의해서 작정이 되는것이니까 그냥 두어도 이러한 원리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부인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문제로서 올라가게될것같으면 누가 권고해도 안될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2만환대를 돌파하고 이것이 올라갈것 같으면 식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환율 유지 위협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 못할것입니다. 경찰권을 발동해서 미가양등을 제지한것이 아니라 그이튿날 수사과에서 한 회합에서 그러한 요지음 실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도움을 얻는데 지나지않는것입니다. 이상이 경찰에서 어떻게 깊이들어갔느냐 하는 내용을……. 경위를 말씀들인것입니다. 그리고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행정당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느냐 말씀인데 이것은 저는 서울시에서 소비되는 하로의 양을 먼저 말씀들이겠읍니다.

저의 서울시는 아시다싶이 160만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로에 한사람이 3합식을 식량을 소비한다면 하로에 서울시 내에서 160만이 4천8백석이라는 쌀이 있어야 하로 유지가

됩니다. 한달이면 14만4천석을 소비하게 됩니다. 1년이면 173만 8천석이 있어야 우리 160만 시민의 식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으로서 서울시내에 공무원의 배급은 제외 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지금 배급하고 있는 관리양곡이 한달에 36249석이라는 것이 나가고 1년동안에는 43만 4988석 이러한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으로서 160만 시민가운데 배급을 받을수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양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년도의 실정입니다. 또하나 거년도의 실정을 볼것같으면 거년에 녀달동안 세국민에대한 정부양곡 방출이 있었는데 한달에 4천5백석씩 방출이 있었었는데 한달에 4천5백석씩 방출을 해서 녀달동안에 18만석이라는 쌀이 정부의 양곡이 방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관리양곡으로서 1년동안에 공무원배급으로서 43만4천석이 금년도에 나간다면 이 18만석 합해서 이쌀은 정부관리양곡으로서 나가는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쌀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이제 173만8천석에서 이제 정부양곡으로 나가는 양을 덜고나면은 1년동안에 112만 3천석이라는것이 부족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이 어떠한 계통으로 들어오는 112만 3천석이라는것을 갖다가 한가마에 6키로 들어가는것으로 한다면 약 284만가마인데 이것이 한달 평균하면 7천8백가마가 어디서든지 들어와야 될 실정입니다.

8키로 들어가는 것으로 환산할것같으면 한달로 잡고 584가마라는것이 서울시에 들어와야만 매달 평균 시내에 들어와야만 그 들어온 양하고 정부에서 나온양하고 합쳐야만 이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정부에서 관리양곡을 거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 매일 평균해서 서울역에 5천8백가마

이상이 서울시에 들어와야만 서울시의 시민이 1년동안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와 노력해서 5천8백여가마씩 매일매일 서울시로 들어올것같으면 시민의 양식에 양적으로는 별 아우○ 없이 지나갈수가 있다고 이러한 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매일 서울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어제그제 만여가마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평균이 5천8백가마에다 비교하면 지금 그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는것이 식량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량 문제로서 양곡의 수문제로서는 저의들 서울시 자체가 양곡을 사들여오는 지금 현재의 정도로서는 안됨으로 농림부를 통해서 서울시내에 매일 평균 5천8백가마 약 6천가마라는 쌀이 들어오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특히 지방에서 나오는 쌀이 서울에 들어오도록 노력하는데 이 서울시가 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산업국장이 잠깐 설명을 하였습니다 만은 12월중에 서울시로 지방의 정부관리양곡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것이 13만석 그중에서 이미 7천석은 들어왔고 또 外米로 말쑥들이며는 3만5천석 중에서 이미 1만5천석이 들어왔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관리양곡으로서 배급할 양곡은 무엇보다도 양적으로 확보하고 또 시장은 자유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곡이 6천가마씩 들어오게 노력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계속 농림부와 연락을 하고 지방에 연락해서 수량적으로 매일 이러한 쌀이 들어오도록 외미나 혹은 우리 국산이 들어오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제 신문지상에도 난 얘기입니다만은 외곡 588만 가마가 속히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있고 소맥분을 대량으로 방출 또는 배급하고

또 배급하는 양곡을 갖다가 필요한때에 필요한 양이 나오도록 적기 적량주의로 식량주의를 내걸고 이러한 주의에 노력하는 동시에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만은 음식점에 잡곡을 섞는다든지 이런 소비제를 간소화하고 지방에 있는쌀이 서울로 들어오는데에 애로가 되는 수송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해서 적극 소극 양면에 농림부와같이 노력해서 수량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직 서울시 자체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나오는 가격문제이니만큼 양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가격문제는 양에 많이 좌우되느니만치 중점을 양확보에 두고있고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단독으로서 할수없는만치 정부와 틀림없이 협력을해서 앞으로 더좋은 정책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의가 지금 말씀들이려고 생각하고있는것이 만년의 방안이라고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의원여러분도 저의들과 다같이 협력해서 이상 더좋은 시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혹은 다같이 식량에대한 위협을 면하도록 일을 할 작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결국은 집행부의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나오셔서 긴시간 말씀하신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긴급동의한 그 취지와 제안에 대한 그 자체와는거리가 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어제 집행부에서 나와계시지 않을때에 제안 설명을 했다 그말씀이예요. 그것은 아마 속기록을 잘 보시지 않았기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고 이 제안에 대한 취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질의하려고 하는 여러가지중에 한건도 아니했기때문에 몇가지를 지적해서 다시한번 질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경찰권을 발동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법적근거를 두고했느냐 아까 부시장 말씀은 조사과에서 상인들과 의논한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나와서……. 각시청에 나와서 1만6천환이상 팔지못하게 한것입니다. 만약에 1만6천환 이상에 판다고하면 엄벌에 처한다. 이것이 각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허위라고 하면은 각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부시장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시장이 지휘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 하나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1만6천환으로 억제한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미가폭리에 대한취체 또한 비록 그것은 과거 군정법령 19호3조를 적용하는것같이 기억됩니다 만은 그 자체는 매점매석한다든가 국민의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있는 매점매석 폭리행위하는 그 자체를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이것을 적용한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거기대한 법적 해석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또한 금후 미가폭등에대해서 그원인 경찰관이 현재는 발동했다는 자체는 신문지상에 25일인가 24일날자로 해제했읍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해제가 잘안된것 같습니다. 서울역일대에 말을 들었읍니다 만은 형사들이 나와서 이쌀을 어디로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간접적으로 업자에게 위협을 주고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과연 시장으로서 알고계신지 모르고계신지 이런 경찰관을 역주변에 배치해서 미가에대한 억제를 할것인가? 요것을 묻고져 하는것입니다

다.

또한 시방 부시장께서는 미가의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것은 미가에대한 그정책과 원인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의혹은 경찰관이 동원되서 1만6천환이상 받지못하게 하기때문에 오늘날 이상과같이 쌀값이 올랐다. 왜? 경찰관이 동원해서 1만6천환이상 받지못하게한 원인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수길 의원; 또 한가지 제가 강의원 말씀에 첨부해서 물어보고저 합니다. 부시장 설명요지에 입각해서 미가가 양등하고있는 현실은 일리가있다고 생각되며 사회조류를 막아낼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감하여 더욱 여사한 미가양등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위협을 불금하는바 지대한 것입니다. 이런 차제 설상가상 격으로 지방 공무원 양곡배급 실정을보면 제가 듣건데 7월 8월 9월 10월분까지도 아직도 배급치 않고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보면 이시청 자체2층에 또 아마 가족이 해산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쌀이없어서 사무시간에 사무를 보지못하고 쌀을 구하러다닌다는 오늘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태까지 배급을 못한 이유가 어디있으며 앞으로 쌀 배급이 있을것이라고 보도된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은 그럼 앞으로는 몇달치식 밀리지않고 주겠금 되어있는 행정조치는 어떠한지 그대비책은 되었는가를 묻고싶습니다.

○장의순 의원; 아까 부시장께서 시당국으로서의 금년도의 식량정책은 이와같은 제도로 하고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좀더 그야말로 서울시민에게 알맞는 식량정책이 있지않은가 생각했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왜냐? 하루에 5천8백가

마 들어오면 서울시내의식량이 충족하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꼭 먹고살아야할 절대량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들어와서 밥만 먹고 살면될 문제인데 현재 서울시내에 양조장이 얼마있으며 엿공장이 얼마있어서 거기 소모되는 쌀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싶습니다. 양조장 엿공장으로 들어오는 쌀을 지금 매점을 하기때문에 실제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온다 하드리도 시장에 나오는쌀이 5천8백가마 절대량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지않는가 봅니다. 엿공장 양조장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조사한것이 있는가 이것을 알지못하면 우리가 확실한 정책을 세울수없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간섭을 한댔자 아무 소용이 없는것입니다. 거듭 말씀들이지만 양조장 엿공장이 몇 개소며 거기에대한 소모량이 1개월에 또는 1년에 얼마가 되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 의원; 오늘 일정에 올른 미가양등으로 인한 경찰력 발동경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묻는다면 이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경찰국장은 확실히 시장의 직권아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경찰은 국립경찰이라고 해서 시장의 지휘감독이 철저하지 못한감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시장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시간여유 달라는것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라면 시장을 통해서 서울시에만 한해서 1만6천환이상 못받겠다고하는 이런 강권발동이라고 할것같으면 서울시경찰국장이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것같으면 치안국장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되지않었나 하는 감을 갖게될때 시당국으로서는 몰랐다는것을 우리가 추측할수 있습니다.

왜냐 어제 부시장이 시간여유를 달라는것은 강권발동을 경찰이 하는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경찰국장이

좀더 시장의 품안에 안겨서 다른국장과 같이 지휘감독을 받게되면 이런 탈선적행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은 다른지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점도 있지만 일방으로는 다른 지방장관지위보다도 높다고 생각할수있고 실지도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도 모르게 내무부를 통해서 경찰국장이 움직이는 폐단이 있다면 서울시민이 서울특별시 행정하에 있지않고 내무부행정하에 치안국행정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점을 근본적으로 고쳐가면 고쳐간다는것보다 시장이 경찰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세우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여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이번 이질의에 대해서 강을순 김수길 장의순 의원찬 이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괄해서 부시장 답변을 들으시고 이정도는 일로 마쳤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첨가해서 하나 묻고싶습니다」 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 의원; 이중구 의원께서 시민의 생활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여러가지로 쓰라린 사정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 앞서서도 대단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본문제는 서울특별시 행정책임자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식량정책부에서 얘기할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해서 여러의원께서도 말씀하고 본의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식량정책은 정책이고 서울시로 앞서서 식량정책이 하나 또 있어야 할것입니다.

오늘날 곡가는 2만환 “베이스”를 오늘이라도 올라갈 현하에 내년 춘궁기에 3만환대를 돌파한다는것은 삼척동자라도 다아



는 것입니다. 내년의 춘궁기에 어떤방책이 있는가? 이것도 서울특별시장으로 앉아서 방안이 있어야겠고 요새 보면 왕왕히 여론이 캄푸라치를 하기위해서 외국에서 양곡도입을 한다는 양반의 하는 式음 마시고 연년히 미가의양등이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는것을 규명하셔서 앞으로는 이 이상 돌파하지않고 시민의 안정한 생활을 도모할수있는가를 고려해서 해주시기바라며 그것은 서울시장한양반이 해결할것이아니라고 국가식량정책에 의지해서 수동적으로만 하시지말고 자동적으로 내년춘궁기를 면하고 배급미를 소비도시에다 집중을 했다가 적절히 배급을 하든지하면 다소간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론해봤댔자 아무소용이 없을것이니까 이만큼 질의는 종결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후에 여기서 잘 사후책을 강구해주실걸 동의해서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간단하게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장을순의원께서 말씀이 지금도 각시장에 경찰관들이 다니면서 1만6천환이상을 못받게 한다. 또는 역근처에 지금도 형사들이 지금도 다니면서 팔지못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라.

그런데 역근처에 형사가 다니는것은 아까 말씀들인대로 역에 경찰관이 몇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에서 들어오는 쌀이 직접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직접가도록 역에서 하차되는 쌀이 그대로 청량리시장중양시장 이런대로 바로 가도록 주로 그사이의……. 역에서 화주가 내린 쌀이 그 중간에서 대량으로 거래행위가 있는것이 사실이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역에는 경찰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역구내에서 시장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구내에서 없도록 하는데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각시장에 다니면서 지금도 경찰관이 1만6천환 이상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하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있다는것은 초문이올시다. 1만6천환이상 못 받는 다는것이 얘기를 하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1만6천환이상 팔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그 경찰관이 지금도 다니면서 1만6천환 이상에 못판다고 말을하고 다니는 경찰관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경찰관으로서 1만6천환 이상에 팔며는 엄벌한다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고위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알아보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지휘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상관의 하나인 제가 담당이라고 했는데 담당되는 저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찬의원으로 부터서 경찰에 대한 책임감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있고 먼저도 제가 말씀들인 바와같이 시장이 운영하고 시장의 감독을 받어서 시장의 지휘를 받을수 있는것이고 저도 언제가 말씀들인바가 있었습니다.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나.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방안이…….

단속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매점매석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내에 쌀이 암만 들어와도 옛이니 술공장에 들어가서 실지로 시민의 식량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지않는 그러한 내용을 말해라 하는것인데 이것은 소비대책라는 것이 금명간 시에서 지시가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옛공장 술업자에 얼마 들어간다는 내용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공무원의 양곡배급에 대해서 잡곡 7·8·9월치가 안나왔는데 어째서 안주었느냐 곧 줄테냐 하는 김수길 의원의 말씀은 이제 잡곡 7·8·9월 석달치가 안나오고있습니다. 못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곡특별회계에서 과거의 잡곡 혹은 외미를 들여와서 배급을 주고왔는데 배급을 못하고 있는것이 상당한 양에 달하고 있습니다.

7·8·9월 석달치가 못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지금 들어오니, 이것은 곧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인기 의원; 시방 부시장께서 말씀하는데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7·8·9월치 양곡배급을 못한 원인 그것은 양곡특별회계에 지금 공무원의 미가대를 아직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급을 못한다.

이런말씀을 하신것같습니다.

제가 여기 낭독하겠습니다.

실지에 있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여기 4억환의 양곡대를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못하고 양곡 배급을 못하고있다.

이런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지방 2천5백환을 받아가지고 석달 넘달동안을 살림을 해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볼때에 각동회가 문을 닫게된 현상에 있습니다. 또한 각구청 직원을 볼것같으면 그날그날의 생활면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무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적에 집행책임자되시는분이 서울시내의 허다한 면을 우리가 비추어 볼때에 지방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3천명 내지 5천명이 그날의 살림이 위협을 느끼고 서울시 행정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되는 이때에 우남회관을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부하를 살릴줄 모르는 이러한 무책임한 실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도 답답해서 산업국장에게 말씀 들였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배급을 못하고있다. 이런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 시의 지방공무원이..... 5천명의 공무원들이 생활의 위협을 느끼고 시행정이 부패에 들어가는 이때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우남회관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부하를 살리지못한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것은 이종구의원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애매합니다. 우리가 경찰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모른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내자신이 서울시내의 실정을 다 알고 묻는데 적어도 160

만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시당국책임자가 애매한 답변을 한다는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만6천환이상 받지말자고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골서 1만7천환에 올라오는 쌀을 영등포에서 1만6천환을 받지말자 그래서 하로동안 시장에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서울시 경찰국에 연락해서 도저히 영등포구는 1만6천환 받고서 쌀을 낼수가 없는 처지이다. 왜그러냐 하면 영등포에서 남대문과 동대문에 가서 쌀을 실고읍니다. 그래서 운임도 있고해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로동안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과 경찰과 타협한 결과에 1만6천환이상 받어도 할수없으니 팔아라 해서 삼십분 이내에 약 3백가마가 들어왔다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후로 주의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무슨 협의를 했다.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기때문에 우리시민과 집행부와 자꾸 민심이 이탈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기를 경고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질의종결 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일로서 종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

○김준식 의원; 오래동안 직제 조례에 대해서 심의부탁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발령이 나오지않은 까닭에 부의 못했습니다만은 아직 상정치못하고 있다가 금명 교육감이 발령이 되었으므로 따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직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직제 조례를 상정하게된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이면은 교육위원회의 직제조례는 문교부에 준칙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안이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는 심의한 결과 여러분앞에 지금 내놓은것이 즉 우리 시의회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올시다.

그러면 간단히 문교부의 준칙과 교육위원회 안과 조금 차이된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교부의 준칙을 말하자면 교육감밑에 양국이 있고 국밑에 여섯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제정된 직제는 교육감밑에 양국이 있고 특별히 서무과를 따로히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고로 장학실과 학사과를 빼고 거기에다가 초등 중등교육과 두과를 두게 된것이올시다.

그러면 우선 이것에 대한 먼저 제일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제2의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 조례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이 올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안)

제 1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설치와 사무분장은 본조례에 의한다.

제 2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장학관 人  
서기관 人  
사서관 人  
사무관 人  
기좌 人  
장학사 人  
주사 人  
기사 人  
사서 人  
서기 人  
기원 人

제 3 조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 명을받아 학사지도와 취학독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관 사무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명을 받아 일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기좌, 기사, 기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서관과 사서는 상사의 명을 받아 도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서울특별시 주재근무케 할수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 기타 사무에 일부를 겸하여 처리케 할수있다.

제 5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 재교육기관을 둘수있다.

제 6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원을 필요로하지않는한 심의회 또는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둘수있

다.

제 7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촉탁 기타 노무직원을 둘수있다.

제 8 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무국 관리국 및 서무과을 둔다.

제 9 조 학무국에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및 문화과를 둔다.

국장은 장학관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서 보한다.

중등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사립학술강습회 기타 사회교육 기관의 교육지도 교원인사 교원재교육 교원자격검정 청소년지도 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초등교육과는 국민학교 유치원 공민학교의 교육지도 교육인사 교육再 교육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과는 사회교육 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기타 교화 육영 학술 기타 문화 일반에 한 기관단체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 조성감독과 명승 고적 천연 기념물 전릉서원 및 祀字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10 조 관리국에는 관리과 영선과와 재무과를 둔다.

국장은 서기관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로서 보한다.

관리과는 학교 교육재단의 설치 폐지 조사 감독 교육 시설 교육위원회 소속재 관리과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영선과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시설의 영선및 학



교 기타 문화시설의 영선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 징수 사용료 수수료 기타세의 수입 및 금고감독 기채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11 조 서무과장은 사무관으로서 보한다.

서무과는 관인관수 기밀사항 학교직원을 제외한 인사 문서 회계 결산 계약 용도 물품관리 공보 법규 회의 통계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12 조 본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의안 설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문교부의 준칙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것이 있고 또 수정안이라고 해서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했으니 각기 분장한 영역이 다를것입니다. 하므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안을 먼저 설명 말씀듣고 이 수정안을 보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옹소」 하는이 있음)

○교육위원 홍사승; 직제조례에 있어서 단지 한가지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제안 하신것과 상이된점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저의가 낸 안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학무국 아래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이렇게 두가지 두신것 이것 저의들 안으로서는 학무국 아래 장학실 학사과 이렇게 둔것이 옳시다.

그러면 저의들이 문교부에서 내려온 안도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내온 안과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학무국에 한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장학실과 학사과를 두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한가지 들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의들이 기초 위원이 되어서…….

박희병 김효창 저 이렇게 셋이 기초 위원이 되었든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교육행정과의 전문가들 모시고 한 20여일 동안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전에 서울시장이 했던 교육국을 그야말로 교육자치제에 부합되는 직제로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을 잘 해나갈수 있냐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저의들이 특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교부안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는 그야말로 장학사 장학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장학 지도를 하는것이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거에서 부터 내려오는 장학사 장학관들은 사무보기에 실지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실정도 파악치못하고 학교아동들을 어떻게 가르키는 것은 모르고 사무에만 열중하기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불지라도 저의들 교육위원회는 단연코 이번 이 기회에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것에 이 장학실을 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은 학사과라는 것을 두어 사무에 대한 문제는 일절 학사과에서 취급해라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는 교육과정이 라든지 생활학습 지도 직업지도라든지 또는 예능교육 보건위생 현직교육 시청각교육 이것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나누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사람들이 이

러한데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있고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지도해야될 책임을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의들이 각 중등학교 내지 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해본 무엇이 있습니다.

각학교 내용이 이제 말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이러한것을 저의들이 본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정말 학교에 나가서 실시지도를 못했다고 하는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의 의견이 장학실을 하나 두어보자 이렇게 되며는 예전에 해내려오든 제도에서 탈피해가지고 학교를……. 교육을 말하자면 잘할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가운데에 의하였든것인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책임행정은 어떻게 할수있나.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과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이 올시다.

과연 중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중등 교육에 대한 문제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만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것은 형적으로 보신 견해이고 저의들의 견지는 종적으로보는 견해올시다.

중등교육 초등교육 이렇게 나누는것보다도 저의들 소견은 초등 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일관성있게 연관성있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들인바와 같이 이러한것을 말하자면 종적으로 나눈것이고 중등 초등 교육과를 주장하시는 분

은 횡적으로 나누어서 본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의가 바라는것은 물론 중등교육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이론도 별문제가 없으니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하는 위치에서 저의들 未安된것이 나 여러분께서 양쪽의 이론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초등교육과로 논아가지고 해달라는 이론도 별로 틀린바 없으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보면 잘해볼까 하는 의도에서 만든것이니 잘 저울질 하셔서 어떻게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잘해 나갈가 하는것을 참작해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큼 제안설명을 하는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수정안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장의순 의원; 아까 문교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와서 간단한 제안설명과 제일독회를 했는데 거기대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릴까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문교부준칙과 또 우리문교위원회 수정안과 교육위원회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대한 문교위원회로서 가진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장학관 장학사가 사무에 시달려서 완전한 장학지도를 못했습니다. 물론 잘했다고 보지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선 일을못했다하는 이면에는 이유가어디있느냐 하는것은 인원이 부족했다하는 것입니다. 서면에 장학관장학사 15명을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시하고있는 장학사초등과중등교육계에 4명을가지고 전학교를 관할한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또 그래서 현재 초등교육계에서는 5명 국민학교교사들을 겸무시켜가지고 장학사 장학관으로 하고있습니다.

초등계에7명 중등계에 5명으로 하고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원만 보충시켜주면 넉넉히

장학지도를 할수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내논안은 장학실을두고 여러가지 열두가지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있어서 물론 저의들도 이안을 받은 지가 오래고 문교당국과도 접촉을 했고 일선에서 교육을 맡아보고있는 사람들과도 절충을 해봤습니다. 장학관 다섯에다 장학사 열다섯을 해서 장학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역시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드라도 엄연히 초등과 중등학교가 갈려질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초등과중등교육과로 나눈것은 엄연히 초등교육은 특수한성격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연령과 초등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중등교육과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중등교육과의 장학사로서 교육위원회의 주관점은 여기 있습니다. 과거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으로서 끝마쳤습니다.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으로서 마쳤기때문에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성을 가지고 연구해나가야겠다는 이론인데 그렇다면 중등교육장학사로서는 능히 초등교육에관한것을 가져다 한다고 합시다.

초등교육을 맡아가지고있는 장학사 그런 사람들은 초등교육에는 권위가있지만 중등학교까지 미칠수가있느냐? 어렵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사를 망라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한개의 이상론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완전히 책임을져 놓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이 규명되지않고 회피할라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책임은 누가지느냐 물론 교육감이 책임이 있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하는 문제에있어서 엄연히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것이 옳다고해서 문교부준칙에 의해서 했다는것보다도 우리로서의 여러가지 과학적으로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해야 겠다고해서 고쳤든것입니다.

그외에 서무과를 뒀다든가 관리국을 뒀다는것은 교육위원회의원안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틀리는것은 학무국문제에 피차 이론이 가는데 그와같은견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이것은 제안자의설명과 보충설명이 있어서 제일의회에질문이 남았습니다. 질문해주세요.

○具喆會 의원; 교육위원회에서나 문교위원회에서 조례안 또는 수정안이 대체로 잘하신것같고 수고들을 많이하셨는데 더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만은 관리사항에 있어서 한계가 석연치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교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해명을 구할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제11조 관리국에는 관리과 영선과와 재무과를 두는데 관리과의 한계와 영선과의 한계에 있어서 관리과는……. 문교위원회안에는 10조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안은 11조로 뒀는데 관리과는 학교 교육 재단의 설치 폐지 조사 감독 교육시설 교육위원회소속재산관리 기타 국내타과에 속하지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과가 재산의설치도하고 폐지도하고 조사도하고 감독도하고 교육시설도하고 다한다 이런말에요. 그런데 영선과에는 이렇게 되있는가하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시설 및 영선 과 학교 기타문화시설의 영선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 직제상식을 봐도 영선이라고 하는것은

기술을 담당으로 하고 시설을 위주로하는 공사과라고 그렇게 알고있고 또 그렇게 되어할것입니다. 그런데 영선과가 담당해야할 교육시설이 관리과로 삼입이 되었고 영선과는 영선 기타 문화시설의 영선지도라고 되었습니다. 영선지도라고 하는 것은 실지면에 있어서 교육시설담당치않고 어떤 영달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말예요.

다시 말씀들이면 기술을 전담하는 과가 아닙니다.

이런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관리과에가서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과가 이런 계획하에 지도를 한다면 이것을 수궁할바가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시설은 관리과로 하였고 영선과는 영선지도를 한다하는것은 핵심문제를 일고서 이렇게 되지않었는가해서 제가 생각하는것은 교육시설은 영선과에다 이관하고 「영선과는 교육위원회소속시설 및 교육시설의 영선과 학교 기타 문화시설의 영선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제도상 또 문맥상 의당되어야하리라고 생각해서 우선초안한 교육위원회에 초안하신 본의를 들고저합니다.

○김석근 의원; 具喆會의원이 말씀하신것이 11조 관리과 영선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한가지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정부가 각 지방관청까지 기구를 간소화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문교육 준칙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내 수정안에 교육감이 잇고 그 밑에 학무국이잇고 관리국이 잇고 저○끝에가서 서무과라 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낸 원안 제9조가 되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은 제8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서무 관리 그 한계가 아마 갈르기가 막연할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선입감에 이런 예기가 있어요. 서울시청에서는 이쪽에서 저쪽과로부터 받아오는 돈이라도 점심이라도 사바사바 해야된다. 모든사람이 이런 정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처음 발족했을때에 좀더 발전적으로서 이러한 것을 시정해나가야 되겠는 그것이 조금 올려서 교육감밑에도 비서실 자격으로 서무과를 두는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사적으로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교육국으로서 교육감밑에는 학무국이 주관국이 되어야 될터인데 관리국에다 넣을것 같으면 관리국에서 금전출납을 하기때문에 이것의 주관대로 된다. 이러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나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여기 이 교육법 8조에도 보면은 수정안에 보면은 학무국과 관리국 및 서무과를 둔다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낸것은 국은 밑에두고 서무과를 두고 서무과장을 둘수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을해서 관리국밑에다 관리과라든지 혹은 서무과를 두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것입니다.

왜그러냐? 과거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주무국인대도 불구하고 금전출납을 못하기때문에 이렇게 했다할것같으면 이것을 수정하지않고 들어가야 되겠다 는 말씀입니까? 안되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또 교육감이 생겼어요. 종래 폐단을 없애고 좀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것이 오늘날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서무과장을 두게되면은 교육감 밑에 있는 직접과다. 또 국장 다음이다.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무슨 행패를 할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번의 교육



위원회가 생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심사숙고하셔서 1, 2독회에 질의가 끝나고 이 안건은 반듯이 관리국 밑에 관리과를 없애든가 이 두과를 합해서 한가지로 신설하고 앞으로 예산조치하는데 있어서는 반듯이 시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것지도해서 과거 전철을 밟고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신중히 참작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근례인데 예산집행하는데 돈을 막 갖다 내버리면 결과에 있어서 이 돈내는데 검토를 해서 줄때에는 내주고 안줄것은 안주어야지 무슨 감정에 사로 잡혀서 하면 안되요. 서무과를 갖다가 또 독립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 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참고삼아 말씀 드린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김주홍 의원; 몇까지 질의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원안에 의할것 같으면 학무과에 대한 직제가 장학실과 학사과 문화과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분담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의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볼것 같으면 학무국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문화과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장학관계를 셋으로 놓느냐 하나로 통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또 하나는 소위 장학과에 학사 무슨 관리라든지 이것이 아닌 그 학사라고 볼수있는 그런 조항이 또한 셋으로 놓느냐 하나로 통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무과에 이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에 의할것 같으면 이것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즉 장학 관계는 장학실에서 하고 학사관계는 학사실에서 하고 또 따라서 문화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기때문에 어느 점까지 여기에 부합이 되었지마는 그 가운데에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안가운데에서 제가 하나의 느낀점은 소위 문화과 올시다.

문화과에 소위 사회교육이라 했어요. 그 문화과에 가장 중요한것이 사회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이 보통 생각 하기에 국민학교 정도 또는 고등국민학교 또 특수학교 맹아 교라든지 기타 특수학교 또는 사설강습소 다 사회교육 기관 이 올시다.

이러한 문제를 장학실과 분리해서 문화과에서 전담해서 처리할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학실로서 장학관계가 여기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학사적인 문제는 학사과의 분담으로 되어있고 또 문화과에서는 이 사회교육의 모든 문제라면 이의가 없겠는데 사회교육이라는 그자체는 역시 특수교육이라고도 볼수있는데 그것은 장학관계하고 분리해서 볼수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논의되고요. 이것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 문교분과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것을 장학실 장학관계를 분리해서 초등과 중등으로 나눈다면 여기에 학사문제가 역시 또한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설립자로 되어있는 서울  
농과대학 이문제는 어떠한 부문에서 그학사행정을 볼것인가  
즉 고등중등학교○ 여기에서 할수있다면 지금은 그명칭에 있  
어서 좀부합되지않느냐 이런것 둘째로 의문되는 것은 사회교  
육에 있어서 문화과가 사회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등교육과에 명증을 가지고 그 말  
미에 가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지도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  
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과와 중등교육과에 이것이 서로 같은  
종목의 사무 관장사항을 혼동해서 한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과에 사회교육과  
또 중등교육과의 소위 고등공민학교라든지 기타 사회교육기  
관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서 해석할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셋째로 역시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묻는것이 올시다.

셋째로는 서무과에 대한 것이 올시다.

아까 김석근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무과가 자칫  
하면 그 주무국인 학무국 또는 거기에 뒷바침하고 있는 관리  
국에 뒤에 서서 그 특별한 권한…….

권한보다도 운영을 할수있는 그러한 영향이 없지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무과를 독립시킨 다는것은 저로서는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개요를 학무국 전에 또는 관리국 앞  
에 서무과를 벌려 놓으면 역시 무슨 인상적으로 서무과가 모  
든것을 주관한다. 이러한 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교육위원  
회에서 내는 안에 대해서 어느점까지 이해하면서 이 문교분  
과위원회에서 내는 수정안에 크나큰 개요는 무엇인가.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들어 가겠습니다.

○이중구 의원;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배청하셨습니다.

첫째에 제10조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 징수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및 금고 감독 기채 예산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줄 압니다.

그러나 현하 상태에 앞서서 이것이 분리독립해서 교육세 부과가 될수있으며 또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징수가 될수있겠는가. 이것은 결국은 이상론이고 실제론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삼분지일에 사무가 징수사무라는 부과사무가 교육세 거기에 잇는데 그것을 전부 거기에 병합되지 않으면 안될 사무가 완전히 교육세나 집세와는 완전히 둘이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앞서서는 교육세라는것은 완전분리해서 거기에 탕-취 할권한도 없고 부과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지로 앞서서 이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시 행정과 교육위원회의 실지행정에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나중에 논리밖에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또 거기서 제4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을 관내각구청에 주재근무케 할수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 기타 사무의 일부를 겸하여 처리케 할수있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는 양쪽 겸무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다.

남의 관청에가서 일을 할려는것은 방빌리는것 밖에 안되어요. 서울특별시 직원으로 앉아서 교육위원회의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 관념이 어디에 한계 점을 둘것이나 밝혀주세요.

○의장 김진용; 그러면 제1의회는 이만 끝이고 여기에 답변은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시고 또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하실것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하십니까?

(의석에서 ○김석근 의원; 시간도 이미 한시가 되어서 저의들이 논의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점심시간두고 오후에 답변 듣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장 김진용; (계속)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전은 지금 한시가 10분남았읍니다 만은 오후 두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진용; 재석 29인으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어요」 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장의순 의원;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낸 수정안과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조례안이 두가지의 학무국에 대한 사항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의 안대로 하기로하고 교육위원회 안을 철회하기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김석근 의원께서 말씀한 서무과독립이 불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안에 있어서 학무국 관리국 서무과 이셋을 두게되었는데 어디까지나 학무국이 주무국이 되겠기때문에 이 학무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잘 움직여 가기위해서 뒷바침을해두는것이 관리국 이라는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다 사무실을 두고하면 학무국의 권한보다 관리국의 권한이 더 커진다는 점이고 또 회계과를 관리국에다 두게되면 역시 관리국장의 권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학무국에 응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 서무과가 교육감아래서 교육위원회의 전 문서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국 문서나 또는 학무국의 문서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국안에 서무과가 있어가지고 학무국문서하든지 전체를 취급한다는것은 체계상 두어둘수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거이예요.

또 한가지는 이 서무과를 독립시킴으로서 회계에 있어서 교육감하고 서무과장하고가 할것같으면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수있지 않겠느냐. 또 자칫하면 서무과장이 나쁘게 말하면 회계과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서무과장은 학무국 관리국에서 쓸돈이면 교육감의 결재를 받어서 지출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무국과 관리국과 동등한 위치에 넣기위해서라도 서무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홍순우 의원; 지금 장의원께서 교육위원회의 안을 철회했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철회를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회의규칙 제14조 5항 6항에 의거해서 그 철회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까닭에 이것을 규칙에 어긋난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식 의원; 지금 교육위원회직제조례에 대해서 교육위원로서 철회가 아닙니다. 철회라고 할것같으면 전적으로다 철회가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두겠습니다.

○김석근 의원; 이 문제가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한바와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을 제안하기전에 수정안부터 나왔고 아주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지금 홍순우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14조에 「의안에대한 수정동의는 5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된다」 했는데 오늘 수정안을 볼것같으면 5인이상이 누구누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5인이상의 동의자가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안이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잠깐 5분동안 휴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본의안이 엄연히 말하면 여기에서 의안으로서 논의될수없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토론치아니한다. 단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기간을 제외한 5일이내에 의원 15인이상의 요구가 없을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는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보고된지가 적어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규칙부터 따지지않고 이것을 의안으로서 상정해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일한 의제가 나왔는데 다시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과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라고 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이것은 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수정안이라해서 審 略하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심의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아직 성안할단계가 못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어느것을 선택해가지고 심의하느냐 하는것을 정하지않고는 이것을 성안치 못합니다.

그러면 규칙 제15조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다시말하면 대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이것은 표결에 부쳐서 어느것을 의제로 삼느냐하는것을 결정지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이런 견지에서 여기에 다소간 규칙에 위반된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문에 부치고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정식 의제로서 선택할것을 동의합니다.

○정태희 의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문교위원회에 안을 제출했기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는 그안을 받아가지고 수정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출한것인데 그후에 교육위원회에서 당신네들이 내놓은 그점에대해서 좀 착오가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할때에 우리들은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할 수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 합의가되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여기에 안을 내놓은것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을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으로 삼어가지고 이자리에서 그원안에 대한 무슨 이의가 있다고 하면 토론하는것이 옳을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내놓고 문교위원회에서 따로 내놓은것 같습니다.

그런점으로 설명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리에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것을 원안으로 해가지고 토론해야 될것입니다.

○이갑수 의원; 조금전에 박의원이 회의규칙 제15조에 해당시켜서 이문제를 먼저 표결에 붙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표결은 일르다고 봅니다.

또 한 시방 정의원께서 문교위원회에서 들어온것이 원안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원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으신것이 원안이라는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것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며 원안이라고 하는것은 좀 모순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안을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해서 표결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상반된 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안을 좀더 대체토론을 해가지고 어떠한 결론적으로 얻은뒤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회의규칙 15조에 해당시켜서 원칙적으로 들어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15조에 해당시켜서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것을 전제로 하고 양안을 이자리에서 대체토론을 해가지고…….

(「대체토론했지요」 하는이 있음)

더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더 말씀들이지않는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하고 대안으로 들어온 수정안이 거리가 멀기때문에 좀 충분히 대체토론을 더해가지고 축조심의할까 이래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들인 건에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만은 직접 축조 동의로 들어간다고 할것같으면 너무 간략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안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것이니까.

직접 본인들이 내놓은 안을 참작해서야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 하는이 있음)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제가 규칙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위원회에서 문안 또는 심사한 조례안은 그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이 엄연히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거치지않는 이자체를 여기서 심의한다는 이자체가 위반이되는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준식 의원;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규칙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강을순 의원께서 좀 규칙에 대한것을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이의제로 나올때에는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왔지 우리문교위원회 독단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계에다 제출해서 의사계하고 합의해서 절대로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제출한것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용; 여기에 지금 까지 제1독회에 대해서 이만한 많은 발언이 있었고 잘 말씀들으셨을 줄압니다.

여러가지 잡달한 말씀이게신데 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발언한분과 또 수정안을 찬성하는 발언 한분 두분에게만 발언권을 들여가지고 원안을 채택하느냐 수정안을 채택하느냐 결정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홍순우 의원; 오늘 교육위원회직제조례가 상정되어가지고 원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했고 수정안은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안을 비교해서 불적에 조금 거리가 있는것같고 또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즉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치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으로 말할것같으면 이 학원 운영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떠한 쇄신을 기한 그런 생각이

없지않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안을 놓고 생각해볼때에 어떠한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나 그 운영면에 있어서나 완전을 기할수가 있느냐. 이런점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아서는 안될줄 압니다.

거기에 있어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가장 타당하지않을까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한것같으면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으로 볼것같으면 거기 학무국이 있어가지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문화과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행제도와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면에 있어가지고 그 운영면에서 볼적에 이것은 단지 한 체계에 중등이다 초등이다 이런것만 정해놓고 거기 교육행정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한것은 지금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단지 어떠한 일에대한 딱 일을 지금 학무국에서 하고있는것은 긍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중 장학실이라는것을 갖다가 생각해볼적에 이것 장학실이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나라 교육에대한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것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이런 세부분에대한 이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이 주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행제도로 말할것 같으면 대부분이 장학관의..... 몇 사람의 장학관의 수중에서 인사이동이 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몇사람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어온것입니다.

이것은 독단을 의미하는것이므로 따로히 구성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어느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서무과

를 직속으로 두기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군정시대에서 부터 오늘날까지 비서정치 비난이 많았든것입니다.

사실 아까 어떠한 분도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서무과로 해가지고 단지 금전출납 이런것뿐인데 하등 구애를 받을것이 없지않느냐 하는 이것은 실지로 이론면을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실지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이 서무과라는것은 이것이 어떠한 전단을해가지고 옛날의 비서 정치를 연상케하는 감이가끔 벌어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말미암아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원안에도 서무과를 갖다가 독립을 시켜놓았읍니다 만은 그것을 관리국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가령 관리국하고 서무과를 통합을 ○○지고 서무과로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관리국안에다 서무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사무권한의 한계가 너무 많고 너무 가벼워가지고 거기서 균형을취하지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분도 없지않아 있을줄 압니다 만은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적에는 반듯이 원안을 가지고 논의할것이 아니라 실지로운영면에있어서 어떤것이 효과적이냐 하는것을 생각할적에는 그 사무권한 이 너무 거대하다 해도 과히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럼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안을 절대로 찬성하여마지않읍니다.

그리고 단지 서무과라고 하는것을 관리국으로 전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정태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가지고 우리가

토의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동의한것이 또 나와서 원안을 주장하기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과 또 원안에대한것이 자꾸 갈려지게된다. 많씀이예요. 그런까닭에 그것을 어떤원칙을 먼저 세워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기위해서 결정치않게 된다면 이것을 혼동을 이르킬것이올시다.

제15조에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모다 부결 또는 미결된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과 원안이 모다 미결된때에는 다시 표결에 부치되 재토론 혹은 위원회에 부탁하여 ○심을 거칠수있다.

다시 표결하여 또 미결된때에는 그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것이 자꾸 탈선되게되니까 불가불 우리 수정안부터 표결에부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대한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안에 대한것은 결정지어야 될줄알고 재 의견을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이갑수 의원; 시방 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분명히 양측안을 토론을 좀더해서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회의규칙 15조에 의해서 수정안부터 표결해나가자는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의장께서 양안을 찬성하는분 한분씩 토론을 끝마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인 문교위원회에서 낸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 원안에 찬성발언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들이는것과 마찬가지로 회의규칙 15조에 의해서 표결에 부칠것 같으면

양안중에 어떠한 안건 하나가 채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김항복 의원; 이제 두가지안으로 자꾸 말씀하는데 다못 두가지안으로 된것은 그것이 다름이아니라 14조에 마지막에가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두가지안으로 안되어있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가운데에 이제 그 장학실건은 문교위원회와합의를 보았으니까 다른 그 형식만 갖지못한것이……. 수정안에대한 형식만 갖지못한것이 그 차이가 되었으니까 그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분리해서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무과안은 문교위원회의 안과 교육위원회의 안과 동일한 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양안을 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장학실 안건에대한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문교위원회와 합의를 보았으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또 마지막에 서무과안은 사실상 문교위원회안과 교육위원회안과 실질적으로보아서 이안은 동일한 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안을 대조해가지고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못 그 교육위원회에서 낸 장학실안 그안에 대해서만 제14조4항에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할것같으면 다합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문제는 해결될것같습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일로 토론종결하고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5인 가 21인 부 7인 기타 7인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 충분한 질의토의가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무슨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박수형 의원; 제2독회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형 의원; 의안 낭독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제1독회에서 끝났으니 인제는 제안자이신 문교위원회에서 나와서 한조목 낭독해서 수조심의하자는것을 정식동의를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 지금 소위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냈다고하는 수정안에 대한 채택이 될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문제는 제1시초 오늘 개회벽두에 직제론이 상정되었을때에 이 수정안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합니다. 원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직제조례를 가지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기때문에 별도로 수정안을 냈다 말씀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들인 현재까지가 직제조례를 문교위안에 대해가지고 제1독회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순서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상 오전회의에서 약 세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요는 서무과를 넣는다든지 영선과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문교위원회  
의 수정안에 대해가지고 제1독회는 이것으로 끝나치고 제2독회를  
넘어가는데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할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제2독회로 넘어가는데 있어서는 오늘 제1의회를 끝나치고  
오늘회의를 이것으로 끝나치고 수정안개소에 대한 연구과정에다  
두기를 동의하는바입니다.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본조례에대해서 제1독회는 이로서 끝나치고 제2독회로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되겠고 혹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회의는 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40분 산회)

---